비밀유지계약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아이피에스 주식회사(이하 "IPS"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삼성전자"와 "IPS"가 제2조의 비밀정보를 보호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삼성전자" 또는 "IPS"가 'Screen Printing 태양전지를 위한 Dielectric Layer 개발'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영업비밀, Idea, 기술정보 및 제반 자료(Dielectric Layer 물질정보 & 전기적특성, Cell 특성 / 개발 상황 포함)를 의미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제공이 서면 외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공시 비밀사항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내용을 요약한 서면에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의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 ③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으며, "삼성전자"와 "IPS"는 본 계약에 정한 비밀유지 및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보호)

- ① "삼성전자"와 "IPS"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2조 제1항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삼성전자"와 "IPS"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열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③ "삼성전자"와 "IPS"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④ "삼성전자"와 "IPS"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공한 물질에 대하여 reverse engineering을 할 수 없다.
- ⑤ "삼성전자"와 "IPS"는 상대방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⑥ 본 조에 정한 비밀보호의무는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 3년간 유효하다.

제4조 (예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 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제3조의 비밀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비밀정보가 공지·공용의 것이거나 본 계약 체결 후 공지·공용의 것이 되는 경우
- 2. 비밀정보의 내용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인 경우
- 3. 비밀정보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지득한 것인 경우
-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 ② "삼성전자" 또는 "IPS"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내용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연구활동을 비롯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이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한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보증)

"삼성전자"와 "IPS"는 상대방에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비밀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사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 ① "삼성전자" 또는 "IPS"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2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3. 1개월 내에 제2조의 협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 4. 7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 5. 제7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 ② "삼성전자" 또는 "IPS"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 ③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삼성전자" 또는 "IPS"가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술/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사용권의 허여, 대리권의 수여, 기타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기술협력계약 기타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로 결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의 제기는 "삼성전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한다.

제9조 (통지, 완전합의)

- ① 본 계약과 관련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 주소로 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 14-1, 삼성종합기술원
- ② 본 계약은 비밀정보의 제공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삼성전자"와 "IPS"의 모든 합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계약 체결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상의 합의로서 본 계약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삼성전자"와 "IPS"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6월 1일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워시 영통구 매탄동 416

"IPS" 아이피에스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대표이사 이 윤 우 (인)

대표이사 문 상 영





The Dow Chemical Company 455 Forest St. Marlborough, MA 01752

Via Federal Express 316839797

June 18, 2009

Mr. Ahn, Samg Wook Solar Development Team IPS Ltd. 1201-3, Dogok-ri, Poseung-Myeon Pyeongtaek-city, Gyeonggi-do 451-822 KOREA

Re: Mutual NonDisclosure Agreement ("Agreement")

Dear Mr. Ahn:

Pursuant to a request by Dong-Ho Kim of The Dow Chemical Company (formerly Rohm and Haas Electronic Materials "RHEM") enclosed are duplicate originals of the abovereferenced Agreement signed by RHEM. If you find the Agreement acceptable, please have an authorized designee of IPS sign both originals. Return one original to my attention at the address below and retain the other for your files.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Dong-Ho Kim @ email address: dhkim@rohmhaas.com.

Best regards,

Theresa Falcone

Legal Assistant

The Dow Chemical Company Electronic Materials Division

455 Forest Street, Marlborough, MA 01752 Tel / Fax: (508) 229-7381 / (508) 229-0553

Email: tfalcone@rohmhaas.com

:tf **Enclosure**